

# 산업안전 보건법

개/정/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바뀝니다!

[ 도급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 I.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핵심사항



## 사업주 등의 책임강화

### 법 적용 대상 확대

새로운 유형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호대상을 「(종전) 근로자 → (개정)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였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등 보호 규정 마련

### 대표이사의 의무 ('21.1.1 시행)

산재예방 강화를 위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도록 하였으며, 수립계획의 성실한 이행의무를 부과함

» **대상** ①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회사 ②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 공사업에 한함) 순위 상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

» **내용** ① 전년도 안전·보건활동 실적 ②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활동 계획 ③ 안전·보건관리 체계·인원 및 역할 ④ 안전·보건에 관한 시설 및 비용

### 발주자 의무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공사 계획·설계·시공 등 전 과정에서 조치 의무를 신설

- ① **계획단계** : 공사규모·예산·기간 등 사업 개요, 공사 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 설계조건 등이 포함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 ② **설계단계**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금액 산출서 등이 포함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확인
- ③ **시공단계** : 최초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확인결과 조치내용 등이 포함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행여부를 확인

## 도급 관련 개정사항

### 도급 관련 집행의 일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개념정의를 명확화

#### 도급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 도급인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

#### 건설공사 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

#### 수급인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 받은 사업주

#### 관계수급인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

## I.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핵심사항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부담 범위 확대

종전

개정

도급인의 사업장 내 22개 위험장소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① **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와 ②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 도급인의 책임장소를 확대

- \* 1.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 붕괴 우려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 3. 안전난간의 설치 필요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 5. 건설용 리프트 운행 6. 지반 굴착하거나 발파작업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 추락 위험 8.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 작업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시 감전 위험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 12. 차량에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13.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 위험 있는 작업 14. 철도차량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 15.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선박 내부 용접·용단작업 등 16. 양중기(揚重機)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의 위험 17. 유기화합물취급 18. 방사선 업무 19. 밀폐공간 20.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 2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보수 작업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사항 등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지정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 안전총괄책임자(건설기술 진흥법)를 둔 것으로 볼
  - » **대상** ① 상시근로자(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 포함)가 **100명\*** 이상인 사업
  - ② 총 공사금액(수급인 공사금액 포함)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는 50명
- » **업무**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 중지 및 재개,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감독 등

산업재해  
예방 조치

-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 시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하여 안전 시설 설치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 ②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장소 지원**,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위생시설 설치에 필요한 장소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I.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핵심사항

- ③ 도급인은 자신과 관계수급인\*, 자신 및 해당 공정의 관계수급인 근로자 각 1명과 함께 분기애 1회 이상(건설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 1회 이상) 작업장의 안전보건 점검을 하여야 함

\*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은 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함

### ❖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사항

- ①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② 작업장 순회점검
- ③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 ④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 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 ⑥ 위생시설(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 정보 제공

유해·위험성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설비의 분해·해체 등 작업, 질식·붕괴 위험 있는 작업 등을 시작하기 전 수급인에게 안전·보건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함

### ❖ 도급 시 정보제공 대상 작업

- ①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종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 \*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 \*\*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 ②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③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 \*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밀폐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및 토사, 구축물, 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 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문서

- ①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 ②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 ③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 I.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핵심사항

### 시정 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 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관계수급인에게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질식·붕괴 위험 있는 작업 등 도급 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 할 수 있음

### 적격수급인 선정

산재예방 조치 능력을 갖춘 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함

### 노사협의체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근로자위원회와 사용자위원회가 동수로 구성되는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한 것으로 봄

### 도급의 제한

#### 금지

① 도금작업 ②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③ 허가대상물질(베릴륨, 비소, 염화비닐 등 12종) 제조·사용작업

» 종전에 인가를 받으면 도급을 할 수 있던 작업들은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고 단시간에 직업병을 발견하기 어려워 지속적인 관찰과 안전보건관리가 필요하여 개정법에서는 사내도급을 금지함

» 다만 일시·간헐적 작업과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내도급을 허용함

#### 승인

① 중량비율 1%이상 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②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을 도급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도급 승인 신청 시 첨부 서류(연장 또는 변경 승인 포함)

- ①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기계·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위험물질의 종류·사용량,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 ②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작업절차, 도급 시의 안전·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 ③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다만, 변경승인은 비해당)

»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 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 할 수 없음

## 도급인의 의무이행 강화

### 내용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 시 「(종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 »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도급인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및 5년 이내 재벌 시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규정을 신설
- » 유죄의 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 내 산재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병과 규정을 신설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대상

개정법에서는 ①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 하며, ②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대상에 포함하였으며**,

- » 법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종(9개)**과 동일하게 정함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①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 모집원, ②건설기계 직접 운전자(27종), ③학습지교사, ④골프장 캐디, ⑤택배기사, ⑥퀵서비스기사, ⑦대출모집인, ⑧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⑨대리운전기사

#### 안전보건 조치·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직종별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하여야 하고

- »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과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나.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b>교육내용</b>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 등	
<b>강사자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교육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이 교육 가능</li> <li>• 교육은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가능</li> </ul>	

- » **벌칙** ◀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보건교육** 의무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II.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 ● 타워크레인 안전 강화

[ 문제점 ] 타워크레인 등의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는 영세소규모 사업주로 작업자 숙련도가 낮고 안전작업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에 취약하여 다수의 산업재해가 발생

- » **개정법** 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 신설**을 통해 숙련도 높은 업체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설치·해체 작업 등을 하도록 함
- ②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에 타워크레인, 향타기 및 향발기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 작업 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함

### ● 지게차 안전강화

사업장에서 중량물 운반목적으로 사용하는 지게차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치 설치와 운전자 교육이수 신설

- \* [ 안전장치 ] 후진경보기·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 설치 등 후방 확인 조치
- \*\* [ 교육이수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중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 받지 않는 3톤 미만 전동식 지게차 운전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이 있거나 지게차 소형건설기계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

### ● 고소작업대 안전강화

지게차, 리프트 등 24종류의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자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대상품목에 **고소작업대**가 추가됨

### ● 작업중지의 요건과 범위 명확화

- »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및 동일 작업으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재발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그 작업의 중지**(일부 중지)를 명할 수 있고
- » 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주변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전부 중지)할 수 있도록 함
- » 한편 작업중지 해제 시에는 중대재해 발생 해당작업 근로자 의견을 청취하고, 해제 심의위원회는 해제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토요일·공휴일 포함)에 개최·심의하도록 함

### ● 위험성평가 관련 근로자 참여 의무화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 크기가 허용 가능 범위인지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 법률상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근로자 참여사항이 의무화되어 **반드시 근로자가 참여**하여야 함

## II.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 화재감시자 배치 확대

종전에는 대규모 공사현장 등에서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함



- » 개정법령에서는 **불꽃의 비산 거리(11m)** 이내·외 가연성 물질,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으로 화재감시자 배치를 확대하여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강화하였고
- » 사업주에게 작업시작 전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작업내용·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 사항 등을 서면 게시하도록 함

### 보건관리자 선임 확대

종전에는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종(시내·외버스 운송업, 화물 운송업, 택배업 등)은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 » 해당 업종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피로, 화학물질 누출 등에 대한 보건관리가 필요하여
  -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종은 선임하도록 규정
- \*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종전) 운수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은 제외)의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개정) 운수업의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작업 중 근로자에게 노출될 경우 건강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주기적인 측정·검진이 필요한 유해인자에 2종(인듐, 1,2-디클로로프로판)**을 추가 지정하였음

###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이행 강화

그간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불이행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함

- » 개정법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효과 강화를 위해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기중토록** 하였으며
- »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받을 경우 200시간 범위 내에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 **법인**에게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함



### III. 현장에서 지켜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 산재발생 시 조치

상황	조치
산재로 사망자, 부상자, 질병자 발생	산재 발생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인지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산재 발생	사업장 개요,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발생 일시 및 장소, 원인 및 과정 등을 기록·보존*

\* 단,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보존 또는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 대체 가능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 ① 제조업종 중 **식료품 제조업, 트레일러 제조업 등**에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계·기구·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와
  - ②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건조설비, 화학설비 등의 기계·기구·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체제

구분	선임 기준	역할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업 : 공사금액 20억 이상</li> <li>• 식료품 제조업, 화학물질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li> <li>• 농업, 어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li> <li>• 기타 업종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li> </ul>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함
관리감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시근로자 5명 이상</li> </ul>	사업장 내 부서단위에서의 산재예방활동 촉진을 위해 사업장의 생산 관련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는 기계·기구·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등 관련 업무 수행하여야 함

### III. 현장에서 지켜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관리체제

구분	선임 기준	역할
안전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료품 제조업, 화학물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 상시 근로자 50명~500명 미만일 경우 1명 이상, 500명 이상일 경우 2명 이상</li> <li>농업, 어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50명~1,000명 미만일 경우 1명 이상, 1,000명 이상일 경우 2명 이상</li> <li>건설업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하청업체의 경우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 1명 이상 선임 - 공사금액별 안전관리자 수*를 달리하고, 1,50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경우 1명 이상의 산업안전지도사 등을 선임           </li> </ul> <p>* 공사금액 700~3,000억원 증가될때마다 1명씩 추가</p> <p>- 전체 공사기간 100 종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선임해야되는 안전관리자 수의 1/2 이상 선임</p>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 수행하여야 함
보건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학물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 상시근로자 50명~5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500명~2,000명 미만인 경우 2명 이상, 2,00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li> <li>기타 제조업 : 상시근로자 50명~1,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1,000명~3,000명 미만인 경우 2명 이상, 3,00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li> <li>농업, 어업, 운수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상시근로자 50명~5,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5,00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li> <li>건설업 : 공사금액 800억 이상(토목공사업은 1,000억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인 경우 1명 이상 &lt;공사금액 800억(토목공사업은 1,000억)을 기준으로 1,400억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gt;</li> </ul>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선임</li> </ul>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 수행하여야 함(안전보건관리자가 없거나 두어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III. 현장에서 지켜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구분	선임 기준	역할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금속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li> <li>• 농업, 어업, 금융 및 보험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li> <li>• 건설업 : 공사금액 120억 이상(토목공사업은 150억 이상)</li> <li>• 기타 업종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li> </ul>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등수로 구성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

####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타워크레인 신호작업 종사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 최초 작업 종사 전 4시간 이상 실시,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 가능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을 실시



## 고용노동부 연락처



구 分	연 락 처	구 分	연 락 처
고용노동부 본부	1350	의정부지청	031-850-764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02-2250-5772	고양지청	031-931-2864
서울강남지청	02-584-0009	경기지청	031-259-0265
서울동부지청	02-2142-8872	성남지청	031-788-1571
서울서부지청	02-2077-6171	안양지청	031-463-7351
서울남부지청	02-2639-2271	안산지청	031-412-1974
서울북부지청	02-950-9831	평택지청	031-646-1182
서울관악지청	02-3282-9092	강원지청	033-269-358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051-850-6480	강릉지청	033-650-2525
부산동부지청	051-559-6670	원주지청	033-769-0823
부산북부지청	051-309-1552	태백지청	033-552-8603
창원지청	055-239-6580	영월출장소	033-371-6240
울산지청	052-228-1889	광주지방고용노동청	062-975-6331
양산지청	055-370-0935	전주지청	063-240-3399
진주지청	055-752-1752	익산지청	063-839-0031
통영지청	055-650-1949	군산지청	063-450-053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053-667-6360	목포지청	061-280-0100
대구서부지청	053-605-9150	여수지청	061-650-0137
포항지청	054-271-6833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064-728-6100
구미지청	054-450-355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042-480-6307
영주지청	054-639-1155	청주지청	043-299-1314
안동지청	054-851-8037	천안지청	041-560-287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032-460-4419	충주지청	043-840-4032
인천북부지청	032-540-7980	보령지청	041-930-6142
부천지청	032-714-8788	서산출장소	041-661-5630

※ 안전보건공단 콜센터 : 1644-4544

